

7.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639호 1999. 12. 28

개 정 이 유

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관한법률(1999. 1. 29, 법률 제5711호) 및 동법시행령(1999.7. 29, 대통령령 제16490호)이 제정되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부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설치함(영 제2조제4항 신설).
- 나.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·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(영 제28조의3 신설).
- 다.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국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정원 126인(4급 1, 5급 3, 6급 10, 7급 20, 8급 10, 9급 4, 기능직 78)을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공무원정원에서 제외함(영 제49조제1항 및 별표3)

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.

제28조제2항중 “18개 사무소”를 “16개 사무소”로 한다.

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

제28조의2(직무)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28조의3(하부조직의 설치 등)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·직급별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이 설치·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

로 정한다.

제49조제1항중 “소속기관”을 “소속기관(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3중 총계 “2,561”을 “2,435”로 하고, 일 반직 계 “1,663”을 “1,615”로, 4급 “38”을 “37”로, 5급 “121”을 “118”로, 6급 “546”을 “536”으로, 7급 “598”을 “578”로, 8급 “276”을 “266”으로, 9급 “52”를 “48”로 하 며, 기능직 계 “897”을 “819”로 하고, 기능 8급 “178”을 “160”으로, 기능9급 “94”를 “89”로, 기능10급 “620”을 “565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2인(4급 1인, 5급 1인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주택회보